

파주시제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65
----------	------

제출년월일 : 2002. 11. 30.

제출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 주민공개를 제한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6조 제3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 및 "시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수정함.(안 제6조 제3호, 제4호)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
- 4. 시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기획담당관실 ☎ 940-4061
입안자	기획담당관	박헌재
	예산담당	김근희
	담당자	조우현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민공개의 제한) 1. ~2. (생 략) 3. <u>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재정운동을 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u> 4. (신 설)	제6조(주민공개의 제한) 1. ~2. (현행과 같음) 3. <u>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정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u> 4. <u>시정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u>